

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1688
----------	------

2020. 9. 4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0.9.4. 상정·의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서윤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(안 제8조제2항)



<p>2. <u>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<u>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-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(2019) 결과, 총 96개 조항에(조례 57개, 규칙 5개)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해당 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(검토보고서 붙임1),

※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

	I 차별 및 인권침해	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	III 시민참여보장
개선점	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	문화권, 반환권, 구제권, 개인정보보호권	참여(참정)권, 평등권
인권 침해 (제한) 분야	<p>1. <u>차별적 용어</u>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</p> <p>2. <u>편견이나 선입견</u>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</p>	<p>3. <u>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</u>에 따른 <u>문화권 제약</u></p> <p>4.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(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(면제)의 올바른 적용여부</p> <p>5. <u>반환권 제약</u>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)</p> <p>6. <u>구제권 제약</u>(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)</p> <p>7. <u>개인정보보호권</u> 보장</p>	<p>8. 기본계획 수립시 <u>주민참여권</u> 및 <u>알권리</u> 보장 여부</p> <p>9. 시민의 <u>공직활동 참여권</u> 보장 및 <u>위촉 해제</u> 관련 차별적 조항</p>

이 개정조례안은, 전시관 이용료 징수만 규정되어 있고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반환권 제약 소지가 있는 조항에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,

전시관 이용 제한<sup>1)</sup> 대상인 ‘술에 취한 사람 등’을 ‘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’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전시관의 이용 제한이 일반 시민의 문화권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, 시민의 권리 보장 및 권리 구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참고로, 전시관 뿐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·과학관·시민청 등에도 각 시설의 이용 제한 대상을 ‘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’으로 동일 규정토록, 해당 조례들의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.

서울특별시 조례명	조 항	권고내용
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제6조(관람의 금지)	<b>입장 및 이용 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</b>  술에 취한 자 등 →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제7조(관람의 제한)	
<b>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</b>	제9조(행위 및 이용의 제한)	
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	제6조(이용의 금지)	
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	제7조(사용의 금지 및 제한)	
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6조(사용제한)	
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제7조(관람의 제한)	
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4조(이용대상자)	

1) '19.3. 전시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시관은 무료 이용되고 있고, 퇴관자나 이용제한자는 없음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